

400만 농민의 권리, 공중보건의 정원 확충!



느덧 4700만 국민은 이제 더 이상 급 성전염성 질환에 시달리는 시대가 아니라, 생활속의 건강증진이라는 예방의 기능이 강조되는 건강증진의 시대에 살고 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400만 농민들은 도시지역의 도시민과 형평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농촌의료체계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농촌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공중보건인력의 정원 확보”이다. 이는 정부의 행정 및 제도의 틀에서 이미 보장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쉽게 잊고 지내온 400만 농민들의 권리이자, 바로 눈앞에 닥친 우리 농촌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는 이렇듯 마땅히 해야 할 제도시행의 의무조차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농촌의료체계의 많은 문제점을 외면한 채,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 400만 농민들의 정당한 권리조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최근 농촌지역의 의료 현황을 보더라도, 없어서는 안될 필수시설인 보건지소는 지난 97년 이후 1,318개소에서 2000년에는 1,269개로 줄었으며, 보건진료소 또한 2,039개소에서 1,906개소로 감소했다. 더구나, 진료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의약품과 의료시설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한하고 있어 아직도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치료나 처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중보건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여 거의 모든 보건의료기관의 공중보건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는 농촌 보건인력의 문제점과 함께 현황 및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원을 밀도는 공중보건인력

현재 공중보건의(이후 공보의)의 배치가능 인원은, 보건소의 경우 의사는 3인 이내 치과의사, 한의사는 2인 이내에서 배치가 가능하며, 통합보건지소의 경우도 의사 2인 이상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 1인 이상이 배치될 수 있다. 또한, 일반보건지소의 경우 의사 1인 이상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

고,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경우는 주변에 치과의원이나 한의원이 인접해있지 않은 경우에 우선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배치인원은 배치가능 정원을 크게 밀돈다. 보건소의 공중보건인력 중 농촌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방공보의의 경우, 강원, 경북, 제주 3개 도는 최소배치가능 인원에 비해 실제 배치인원은 50%를 넘지 못한다. 특히, 경북은 최소배치가능 인원이 48명 이상이나, 실제 배치인원은 22명뿐이다.

구리, 안산, 양주, 인제, 전주, 목포, 영주, 청도, 울릉 등 9개 시·군의 보건소에는 아예 한방공보의가 없다. 전국적으로는 최소배치가능 인원의 65.4%만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통폐합으로 만들어진 통합보건지소도 통합된 넓은 지역을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의료기관 임에도 정원이 확보된 곳이 드물다. 배정가능 인원이 2명 이상인 양방공보의도 미처 확보하지 못한 곳이 많으며, 한방공보의나 치과공보의는 대부분이 확보하고 있지 못한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심화되는 고령화와 직업 특성상 대부분 농업인들이 근골격계 질환, 퇴행성 질환등으로 고생하고 있어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도 한방공보의의 인원 충원은 더디기만 하다.

이런 경향은 소규모 보통보건지소 경우 더욱 두들어지는데, 경기 7개소, 강원 4개소, 전북 5개소 등 양방공보의가 없는 곳이 30여 군데나 된다. 전체 1,254개 보통보건지소에 총 공보의의 인원은 1,950명으로 1개의 지소에 1.5명 정도 밖에 돌아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공중보건의의 배치는 지역

● 보건소의 한방공보의 배치 현황

| 구 분 | 경기 | 강원 | 충 북 | 충 남 | 전 북 | 전 남 | 경 북 | 경 남 | 제 주 | 광 역 시 | 계 |
|---------------|------|------|------|------|-------|------|------|------|------|-------|------|
| 최소 배치가능 인원(명) | 38 | 30 | 20 | 30 | 28 | 44 | 48 | 42 | 8 | 10 | 298 |
| 실제 배치인원(명) | 24 | 15 | 12 | 24 | 31 | 30 | 22 | 27 | 4 | 6 | 195 |
| B/A(%) | 63.2 | 50.0 | 60.0 | 80.0 | 110.7 | 68.2 | 45.8 | 64.3 | 50.0 | 60.0 | 65.4 |

A-최소배치가능 인원, B-실제 배치인원

● 전국 보통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확보 현황

| 지 역 | 한방공보의 | 양방공보의 | 치과공보의 | 지 역 | 한방공보의 | 양방공보의 | 치과공보의 |
|-----|-------|-------|-------|-------|-----------|--------------|------------|
| 경기도 | 14 | 122 | 66 | 경북도 | 15 | 214 | 92 |
| 강원도 | 8 | 92 | 54 | 경남도 | 6 | 160 | 79 |
| 충북도 | 20 | 95 | 23 | 제주도 | 4 | 13 | 10 |
| 충남도 | 8 | 154 | 68 | 1특6광 | 10 | 61 | 23 |
| 전북도 | 9 | 137 | 58 | 계 (%) | 111 (5.7) | 1,247 (63.9) | 592 (30.4) |
| 전남도 | 17 | 199 | 119 | | | | |

●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 현황 및 공중보건의(군대체 의료 인력) 공급 현황

| 구 분 | 보건소 | 양방공보의 | 치과공보의 | 한방공보의 | 보건지소 | 양방공보의 | 치과공보의 | 한방공보의 |
|------|-----|-------|-------|-------|------|-------|-------|-------|
| 1998 | 243 | 323 | 130 | 41 | 1266 | 1272 | 617 | 10 |
| 1999 | 242 | 354 | 157 | 106 | 1271 | 1293 | 652 | 60 |
| 2000 | 242 | 348 | 150 | 130 | 1262 | 1262 | 619 | 21 |

보건복지부(2001)

별, 공보의 과목별 분포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양방의 1,600여명, 치과의 700~800명, 한방의 130여명 등 인력부족에 시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과목별 편차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나

그러면,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대답은 공보의가 배치되는 과정에 있다. 공보의는 병무청에서 군대체 의료인력을 배정하는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병무청의 관계를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각 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반독립적인 위치에서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지휘를 받기 때문에, 지도·감독 능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도, 예산문제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도 공보의 소요조사와 공급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즉,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담당하는 두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의 부적절한 관계와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공보의의 배치에

대한 악순환은 반복되어 왔으며, 의료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농촌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아온 것이다.

400만 농민의 권리, 우리손으로 되찾자!!

올해도 역시 8월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03년도 공중보건의사 소요조사'를 실시하며, 9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취합된 소요인원을 병무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제, 농민의 손으로 그 동안 지나쳐 버린 권리 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요조사가 실시되는 8월, 각 도·시·군·읍·면에서 각 지역의 공중보건의의 정원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 농민들이 필요한 보건인력 수요'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마디로 장기적인 방향 제시를 못한 채 안일한 처방만을 반복한 지방자치단체와 예산 아까운 줄만 아는 보건복지부가 못한다면 이제 400만 농민들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한농연**

(자료 제공 : 전국한의과대학 졸업준비협의회)

● 군의관·공보의 등 인원배정 관계도

